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 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병 섭)